

현행	개정안
<p>제4조 (준용) “(생략)”</p>	<p>2. 용자방법 <u>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용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용자신청을 하면 군수가 심사후 용자결정을</u></p> <p>3. 용자금의 상환 <u>용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며 이자율은 년리 5퍼센트로 함.</u></p> <p>① 기타 용자금의 지급절차, 용자비용, 용자한도 및 용자조건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p> <p>제5조 (준용) “(현행 제1조와 같음)”</p>
<h2 style="text-align: center;">서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h2> <p>서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 “서산군주차장설치조례”를 “서산군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로 한다.</p> <p>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등) ①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p> <p>② 제1항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군수의 급지별, 주차장 이용시간별 및 주차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p> <p>③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급지는 군수가 교</p>	<p>통여건 및 지가등을 감안하여 정한다.</p> <p>이 경우 급지별 요금 수준은 1급지가 2급지의 1.5배 내지 2배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p> <p>④ 주차장이용시간별 차등요금제는 2시간 초과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가산한다. 다만 3급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주차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군수가 정한 주차수요 밀집 시간대에 주차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가산한다.</p> <p>⑥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이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p> <p>⑦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p> <p>⑧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p>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요율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이한다.

②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이경우 제1항의 주차요금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급지별 및 주차장 이용시간별 차등요금제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경감은 제3조에 규정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등을 준용한다.

제4조의 2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② 군수가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하역주차구간내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등을 명기한 하역주차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하역주차 구간내에서 주차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를 적용 과태료에 처한다.

제10조 “제1항” 중 “별표 4”를 “별지 4”로 하고, “제2항” 중 “영 제6조 제4항의”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시 거리 범위는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안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영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대수에 20퍼센트를 추가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일반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범위) 업무, 판매, 관람 집회시설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법정의 무대수보다 20대 이상 설치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제2항” 중 “영 제6조”를 “영 제10조”로 하고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을 “주차요금”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관리비)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의 요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8조의 2”를 “제18조”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별표 6”을 “별지 6”으로 하고 “제18조의 3”을 “삭제” 한다.

제18조 다음에 “제4장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설하고, 제4장 다음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시설 기준)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표율, 용적율 및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높이제

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건표율 : 9/10이하
2. 용적율 : 1,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가.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이하

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폭 배 이하.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장 보칙”을 제19조 다음에 “제5장 보칙”으로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20조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 중 “군수가” 다음에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하고, 제20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1조중 “제2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며, “별표 5”를 “별표 3”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이 조례 시행전의 주차장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이를 폐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명 “서산군 주차장 설치조례”</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p> <p>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p> <p>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p>	<p>제명 “서산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p> <p>“(삭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p>	<p>제3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등)</p> <p>①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p> <p>② 제1항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군수는 급지별 주차장 이용시간별 및 주차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p> <p>③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급지는 군수가 교통여건 및 지가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이경우 급지별 요금 수준은 1급지가 2급지의 1.5배 내내 2배수준이 되도록 정한다.</p> <p>④ 주차장 이용시간별 차등요금제는 2시간 초과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가산한다. 다만, 3급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주차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군수가 정한 주차수요 밀집 시간대에 주차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p> <p>⑥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p> <p>⑦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 설)”</p>	<p>경감할 수 있다.</p> <p>⑧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p> <p>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추가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p> <p>2. 주정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p> <p>3.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제3조의 2(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등)</p> <p>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주차거부금지) “(생략)” “(신설)”</p>	<p>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이 한다.</p> <p>②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이경우 제1항의 주차요금을 준용할 수 있다.</p> <p>③ 금지별 및 주차장 이용시간별 차등요금제와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경감은 제3조에 규정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등을 준용한다.</p> <p>제4조(주차거부금지) “(별행과 같음)” 제4조의 2(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p> <p>①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p> <p>② 군수가 하역주차 구간을 지정 하였을 경우에는 하역주차구간내에 제한 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등을 명기한 하역주차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하역주차구간내에서 주차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15조</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장 법 및 배치등은 <u>별표4의 배치도를</u>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로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u>영 제6조 4항의</u>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생략)”</p> <p>제13조(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개발 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는 <u>별표2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u> 이경우,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라 확보해야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대수가 1대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율 요하지 아니한다.</p>	<p><u>의 2를 적용 과태료에 처한다.</u></p> <p>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u>별지4</u></p> <p>② <u>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u>.....</p> <p>③ “(현행과 같음)” “(삭제)”</p> <p>제13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 부설 주차장 인근설치시 <u>거리범위는 당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 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u></p>
<p>제14조(상업의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p>	<p>“(삭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주차장의 설치기준) 거주지역, 준거주 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영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에 정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별표3에서 정한 연면적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주차장 정비기구,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설계 구역안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관람 집회시설,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영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대수에 20퍼센트를 추가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5조(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공동주차장”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0미터 이내로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7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제3의 규정하고 있는 조업 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기준 주차대 수 5%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건축 물의 부설주차장을 조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시에 군수가 지정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다음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 동선 2. 전체주차장 평면도 및 주차동선 3. 조업 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배치 계획 등)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등 을 별도사용, 관리할 수 있는 계획 	<p>“(삭 제)”</p> <p>제17조(관리비)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 는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 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 수할 수 있다.</p> <p>다만, 관리비의 요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 정으로 정한다.</p>
<p>제18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 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 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옥상 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주차식 운반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의 2(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③ 생략)”</p>	<p>제18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지체 부자유자 전용 표지는 별표6의 기준에 의한다.</p>	<p>④ 별지6</p>
<p>제18조의 3(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 관리에 지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p>	<p>“(삭 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비의 요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4장 주차전용 건축물</p> <p>제19조(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시설기준)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폐율 : 9/10 2. 용적을 : 1,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 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폭 배이하.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일 경우 1.8배로 한다. 다.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 4 장 보 칙</u>	<u>제 5 장 보 칙</u>
<p>제19조(과징금처분) ① 법 제1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군수가 _____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p> <p>③ “(생 략)”</p> <p>④ “(생 략)”</p> <p>⑤ “(생 략)”</p>	<p>제20조(과징금 처분) ① “(삭 제)”</p> <p>① 영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한.....</p> <p>.....</p> <p>.....</p> <p>.....</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③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④ “(현행 제5항과 같음)”</p>
<p>제20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p>	<p>제21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p> <p style="text-align: center;"><u>별표 3</u></p>

“(별표 1)”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제3조 1항 관련)

구 분	2시간 까지 (1구획 30분기준)	2시간 초과 (1구획 30분기준)
1 급 지	500원	1,000원
2 급 지	300원	600원
3 급 지	200원	-

“(별표 2)”

노외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조의 2 관련)

구 분	2시간 까지 (1구획 30분기준)	2시간 초과 (1구획 30분기준)
1 급 지	500원	1,000원
2 급 지	250원	500원

“(별표 3)”

과태료 부과 기준

(제21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별	구 분	과 태 료
1. 법 제30조 제1항 각호 해당자	바닥면적 500㎡ 미만	90
	바닥면적 500㎡ 이상	100
2. 법 제30조 제2항 각호 해당자	바닥면적 500㎡ 미만	40
	바닥면적 500㎡ 이상	50

비고 : 군수는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 부과할 수 있다.

신·구조문 데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p>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제3조 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465 1108 666 1919"> <tr> <td>급 지</td> <td>1회 주차요금</td> <td>월 정기 주차요금</td> </tr> <tr> <td>구 분</td> <td>(1구획당 30분마다)</td> <td>주 간 야 간</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able>	급 지	1회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구 분	(1구획당 30분마다)	주 간 야 간							<p>“(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노심주차장 주차 요금표 (제3조 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541 257 787 1074"> <tr> <td>급지구분</td> <td>2시간 까지 (1구획 30분기준)</td> <td>2시간 까지 (1구획 30분기준)</td> </tr> <tr> <td>1 급 지</td> <td>500</td> <td>1,000</td> </tr> <tr> <td>2 급 지</td> <td>300</td> <td>600</td> </tr> <tr> <td>3 급 지</td> <td>200</td> <td></td> </tr> </table>	급지구분	2시간 까지 (1구획 30분기준)	2시간 까지 (1구획 30분기준)	1 급 지	500	1,000	2 급 지	300	600	3 급 지	200	
급 지	1회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구 분	(1구획당 30분마다)	주 간 야 간																									
급지구분	2시간 까지 (1구획 30분기준)	2시간 까지 (1구획 30분기준)																									
1 급 지	500	1,000																									
2 급 지	300	600																									
3 급 지	200																										
- 비 고 -																											
1.	<p>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p>																										
2.	<p>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나머지 시간은 야간에 로 본다.</p>																										
가.	<p>4월~10월 08:00~20:00</p>																										
나.	<p>11월~ 3월 09:00~19:30</p>																										
3.	<p>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된 군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도심, 부도심, 지하철 연계주차장 등)</p>																										
4.	<p>주차요금은 당해 군의 특성 및 차량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중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p>																										

신·구조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p> <p>민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제3조 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521 1106 725 1925"> <thead> <tr> <th rowspan="2">급 지 구 분</th> <th rowspan="2">1회 주차권 1구획 30분마다</th> <th rowspan="2">1일 주차권</th> <th colspan="2">월 정기 주차요금</th> </tr> <tr> <th>주 간</th> <th>야 간</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500원</td> <td>6,000원</td> <td>100,000원</td> <td>75,000원</td> </tr> <tr> <td>2급지</td> <td>250원</td> <td>3,000원</td> <td>50,000원</td> <td>35,000원</td> </tr> </tbody> </table>	급 지 구 분	1회 주차권 1구획 30분마다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요금		주 간	야 간	1급지	500원	6,000원	100,000원	75,000원	2급지	250원	3,000원	50,000원	35,000원	<p>“(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p> <p>노외주차장 주차 요금표 (제3조 2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612 255 808 1074"> <thead> <tr> <th>급지구분</th> <th>2시간 까지 (1구획 30분기준)</th> <th>2시간 까지 (1구획 30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급 지</td> <td>500</td> <td>1,000</td> </tr> <tr> <td>2 급 지</td> <td>250</td> <td>500</td> </tr> </tbody> </table>	급지구분	2시간 까지 (1구획 30분기준)	2시간 까지 (1구획 30분기준)	1 급 지	500	1,000	2 급 지	250	500
급 지 구 분				1회 주차권 1구획 30분마다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요금																					
	주 간	야 간																									
1급지	500원	6,000원	100,000원	75,000원																							
2급지	250원	3,000원	50,000원	35,000원																							
급지구분	2시간 까지 (1구획 30분기준)	2시간 까지 (1구획 30분기준)																									
1 급 지	500	1,000																									
2 급 지	250	500																									
<p>- 비 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제19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급지구분, 주·야간의 시간구분 및 주차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의 기준에 준한다.(단 비교 내용중 제5호 제외) 기타 사항은 민영주차장 설치허가서 및 주차장 개설자 가 군수의 승인을 받은 관리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p> <p>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43 1108 722 1921"> <thead> <tr> <th data-bbox="443 1598 495 1921">구</th> <th data-bbox="443 1108 495 1598">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95 1598 722 1921"> 영 제6조 제1항 제5호(주거, 준주거, 준공업 지역에서 의 제1호, 제2호의 용도) </td> <td data-bbox="495 1108 722 1598"> 주차대수 1대의 산출 기준면적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200㎡이상 400㎡미만으로 조정(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조정 할 것) </td> </tr> </tbody> </table>	구	분	영 제6조 제1항 제5호(주거, 준주거, 준공업 지역에서 의 제1호, 제2호의 용도)	주차대수 1대의 산출 기준면적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200㎡이상 400㎡미만으로 조정(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조정 할 것)	<p>“삭 제”</p>			
구	분							
영 제6조 제1항 제5호(주거, 준주거, 준공업 지역에서 의 제1호, 제2호의 용도)	주차대수 1대의 산출 기준면적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200㎡이상 400㎡미만으로 조정(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조정 할 것)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제19조 관련)									
과 징금 가 감 기준									
위 반 행 위	위 반 정 도	기 본 과 징금	가 감 후 과 징금	신 고 업 소	허 가 업 소				
1. 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할때	위 반 시 위반상태가 1개월이상	250			25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위 반 시 2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50%이상 3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100%이상	100	90	100	110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위반할때	위 반 시 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50	45	50	60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때	위 반 시 2회이상 위반시	50	45	50	55				
					60				

“사 제”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위	반	행	위	반	정	도	기	본	가	감	후	과	징	금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때			위	반	시		50		신	고	업	소	과	징
				2회이상	위	반			시	45	55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할때			개선명령	1회	위	반	50		45	55			55	60
				2회이상	위	반			시	55	60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때			위	반	시		50		45	55			55	60
				2회이상	위	반			시	50	60			
8.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무를 허가없이 양도하거나 양수할때(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위	반	시		50						50	60
				위반상태가 1개월이상										

신·구조문 대 비 표

현	개 정 안																				
(별표 5) (제20조 관련) 과 태 로 부 과 기 준 (단위 : 만원)	“(별표 5)”를 “(별표 3)”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과 태 로 부 과 기 준 (단위 : 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위 반 행 위 별</th> <th>구 분</th> <th>과 태 로</th> </tr> </thead> <tbody> <tr> <td>1. 신고를 아니하고 노외 주차장을 설치한자(법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 관련)</td> <td>바닥면적 500㎡ 미만 바닥면적 500㎡ 이상</td> <td>90 100</td> </tr> <tr> <td>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기한자(법 제16조 관련)</td> <td>허 가 주 차 장 신 고 주 차 장</td> <td>50 40</td> </tr> </tbody> </table>	위 반 행 위 별	구 분	과 태 로	1. 신고를 아니하고 노외 주차장을 설치한자(법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 관련)	바닥면적 500㎡ 미만 바닥면적 500㎡ 이상	90 100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기한자(법 제16조 관련)	허 가 주 차 장 신 고 주 차 장	50 40	<table border="1"> <thead> <tr> <th>위 반 행 위 별</th> <th>구 분</th> <th>과 태 로</th> </tr> </thead> <tbody> <tr> <td>1. 법 제30조 제1항 각호 해당자</td> <td>바닥면적 500㎡ 미만 바닥면적 500㎡ 이상</td> <td>90 100</td> </tr> <tr> <td>2. 법 제30조 제2항 각호 해당자</td> <td>바닥면적 500㎡ 미만 바닥면적 500㎡ 이상</td> <td>40 50</td> </tr> </tbody> </table>			위 반 행 위 별	구 분	과 태 로	1. 법 제30조 제1항 각호 해당자	바닥면적 500㎡ 미만 바닥면적 500㎡ 이상	90 100	2. 법 제30조 제2항 각호 해당자	바닥면적 500㎡ 미만 바닥면적 500㎡ 이상	40 50
위 반 행 위 별	구 분	과 태 로																			
1. 신고를 아니하고 노외 주차장을 설치한자(법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 관련)	바닥면적 500㎡ 미만 바닥면적 500㎡ 이상	90 100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기한자(법 제16조 관련)	허 가 주 차 장 신 고 주 차 장	50 40																			
위 반 행 위 별	구 분	과 태 로																			
1. 법 제30조 제1항 각호 해당자	바닥면적 500㎡ 미만 바닥면적 500㎡ 이상	90 100																			
2. 법 제30조 제2항 각호 해당자	바닥면적 500㎡ 미만 바닥면적 500㎡ 이상	40 50																			
- 비 고 - 군수는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 부과할 수 있다.	- 비 고 - 군수는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 부과할 수 있다.																				